

고 시 반 운 영 규 정

(제정 1983. 5.24.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국가고시(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 등)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시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25.>

제2조(업무관장) ① 고시반의 운영 및 관리는 학생취업처장이 총괄한다. <개정 2013.7.25., 2019.10.17.>

② 고시반의 행정업무는 진로취업지원실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3.7.25., 2019.9.1.>

③ 고시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고시반에 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, 학생취업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9.10.17.>

④ 고시반 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17.>

⑤ 삭 제 <2019.10.17.>

제 2 장 지도위원회

제3조(설치) 고시반의 운영 및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7.25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고, 위원은 고시반 지도교수, 진로취업지원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7.25., 2019.9.1.>

③ (삭 제)

④ (삭 제)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고시반원 선발 및 징계에 관한 사항
2. 고시반원에 부여되는 제반 특전에 관한 사항
3. 기타 고시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3.7.25.>

제 3 장 준 칙

제7조(준칙) ① 고시반원은 학생준칙, 고시반 규정 및 기타 본교 학생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고시반원은 학생자치활동이나 학생간부 등 학업이외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0.17.>

제 4 장 반원 선발

제8조(선발) ① 고시반원의 선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선발 시험에 합격한 자
2. 신입생 중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
3. 재학 중 각종고시(사법, 행정, 외무, 회계, 기술, 세무 등) 1차 시험에 합격한 자
4. 본교 졸업 후 2년 이내의 사람으로서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한 자 및 1차 시험에 합격한 자
5. 고시반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지도위원회에서 승인한 자

② 전항의 선발 기준 등은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9조(보칙) 단과대학별 국가고시준비반 등은 당해 학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8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